

한국의 對開途國 경제협력: 概念과 接近方法

황 인 정*

<목 차>

- I. 서론
- II.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필요성
- III.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개념
- IV.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형태와 관리수단
- V.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 VI.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확충방향
- VII. 결 론

I. 서론

한국은 1987년 이후 對북경제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개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對개도국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리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어떠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단계에서 우리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또 그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추진하는 對外경제협력의 문제는 무엇인가.

II.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필요성

한국의 對개도국(특히, 對동남아)협력은 정치·외교적 필요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측면에서도 한국경제의 고도화·국제화에 따른 필연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첫째, 지나친 미·일 의존에 따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다변화가 불가피

* 산업연구원 원장

하다. 점차 심화되는 선진제국과의 통상마찰을 감안할 때 새로운 상품 및 투자시장으로서 동남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본재의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함은 물론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對개도국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중장기시각에서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기구출연 경제협력기금의 확충 및 對개도국 자금이전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흑자를 관리함으로써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의 명분을 줄여가며, 또 적극적으로 투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선발개도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후발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제 개도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개도국으로부터의 협력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대내적 필요성 뿐 아니라, 선진제국의 對韓 통상압력의 일환으로 개도국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케하려는 책임분담론을 한국이 주체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對개도국 협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 내지 남북통일의 기반확충과 같은 정치·외교적 목적도 있으나 경제적 시각에 한정시켜 볼 때, 시장 및 자원확보를 통한 국민경제의 후생증대라는 경제적 동기와 아울러 한편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동기가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대외적 명분보다 대내적 필요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고려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목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의 상품·기술·자본의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함.
- (2) 우리의 산업발전과 국가경영에 필요한 해외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함.
- (3) 우리의 기술과 유상자본을 개도국에 이전하며, 우리의 시장을 그들에게도 전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국경제 사이에 산업구조상·시장상

의 보완관계를 형성케 함.

(4) 비동맹권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대한지지기반을 확충함.

그동안 우리는 전후복구 및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외원 및 외자차관 등, 「받는 협력」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를 통해 주변국가(peripheral states)들이 겪고 있는 종속적 개발(dependant development)의 고리를 비교적 현명하게 벗어나서 21세기에는 이른바 중심국가권으로의 진입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최근들어 「주는 협력」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는 협력」은 「받는 협력」에 비해 훨씬 시행하기가 어려운 다른 차원의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주는 협력」의 경우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공여국의 적극적 관여는 내정간섭 내지 「근달린」협력이라는 비판과 오해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잘못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한감정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는 「부메랑」효과나 같은 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는 협력」은 「받는 협력」에 비해 훨씬 용의주도한 계획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분명한 목적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국내의 대외협력기관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주권국가와의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다른점이 없다. 그러나 한국보다 경제개발이 뒤떨어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질상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 (1) 개도국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한국이 지원해야 할 수혜대상국인 점에서 선진국이나 경쟁국과의 협조관계와 다르다.
- (2) 장기적으로 한국이 주도적 입장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받는 협력」과 다르다.
- (3) 선진국들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종주국으로서 과거 식민국가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시작되었고, 절대우위의 자본·기술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역사적 연유가 없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본·기술력으로 對개도국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정책방향 및 규모, 협력수단에서 다를 수 밖에 없다.

(4) 한국의 경우 對개도국 협력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활용해야 하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제 탈냉전 시대 이념이 아닌 국익우선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對개도국 협력도 그러한 맥락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더우기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對후발개도국 경제협력은 국제주의적 책임분담론의 측면에서라기 보다 아직은 경제주의적 동인에 의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당위적으로는 다자간(multilateral) 경제협력보다 양자간(bilateral) 경제협력에 중점이 놓여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입장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협력사업은 선발개도국으로서 후발개도국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기술의 우월성, 경제개발상을 과시해야 하는 한편, 그들에게 과거 선진제국의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개도국들과 공동이해를 같이한다는 협력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호배치되는 양면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IV.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형태와 관리수단

1. 對개도국 협력의 본질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명분상 인도주의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제국주의적 발상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제국들은 과거 식민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통치방식의 연장으로서 「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대외경협을 이용하여 왔다.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외관상 후진국의 개발을 돕기위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시혜적·양허적 성격을 갖는 자본·기술의 이전 즉, 「주는 협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실질적으로는 비경제적 요인까지를 고려한 종합적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여, 주는 것 보다는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려는 (주고 받는 협력) 장기적인 포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취지는 양자간(bilateral)의 경제협력의 경우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수혜국으로부터의 비판이 생겨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

한 다자간 경제협력이 점차 증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프로젝트 선정, 자문관 파견 및 기자재 구입 등 실제 시행과정에서 양자간 경제협력에 준하는 영향력이 클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2. 형 태

경제협력은 상품교역과 건설수주, 해외인력 진출 등 용역의 수출입까지 포함하는 국가간 경제행위 일체를 일컬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OECD의 분류기준에 따라 자금형태로 수혜국에 이전되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기술협력사업을 일컫는다. 특히 좁은 의미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만을 의미한다. 對개도국 경제협력에 있어서 자금지원형태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양자간 무상자금협력(Bilateral Grants & Grants-like Flows)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양자간 양허성 자금협력(Bilateral Loans at Concessional Terms)
- 다자간 자금협력(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② 기타 공적 자금지원(Other Official Flows)

- 양자간(bilateral)
- 다자간(multilateral)

③ 민간 자금협력(Private Flows)

-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 양자간 주식투자(Bilateral portfolio)
- 다자간 주식투자(Multilateral portfolio)
- 연불수출신용(Export credits)

④ 사회단체의 무상원조(Grants by Private Voluntary Agencies)

한편 기술협력을 경로별로 보면, 상업적 경로와 비상업적 경로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상업적 경로로는 기술유통시장, 직접투자, 푸엔트 수출, 컨설팅기업, 기술지도, 기술자 파견 등의 경로가 있다. 또 비상업적 경로는 전문지, 산업박람회, 국제회의, 기술연수, 공동연구·훈련, 유학생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3. 관리수단

일반적으로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자본·기술 및 상품 등, 현물의 이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한국의 對개도국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서는 돈, 사람, 정보라는 세가지 주요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integrated combination)되어야 한다. 돈은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지원에 따르는 차관공여를 위한 자금 등을 의미한다. 또 협력에 필요한 사람으로는 ① 개도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사정에 정통한 對개도국 지역전문가뿐만 아니라 ② 개도국내에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친한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로는 ① 개도국의 경제·산업은 물론이며 정치·사회·지리·자원, 인간성, 인맥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대내적으로 축적해야 하며, 또 ②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사정과 아울러 역사적·사회적 여건과 대내외정책방향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서 한국과 협력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대외홍보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V.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 규 모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협력사업은 60년대 중반 USAID의 자금지원으로 “제3국 훈련”등 對개도국 기술협력사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나, 70년대 이후에야 우리 정부의 주관하에 비록 소규모이지만 개도국 연수생훈련 등의 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87년 6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창설 등으로 자본협력에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민간기업에 의한 對개도국 기술훈련사업도 그들의 사업진출과 연계시켜 부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90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의 창설로 기술협력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각부처에서 관리·집행하던 기술협력사업을 종합관리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선진제국의 對개도국 협력은 초기에는 양자간협력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남북문제의 국제정치상 남북문제의 역학관계변천에 따라서 최근에는 다자간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피동적 참여의 결과로서 국제기구출연금 등 다자간협력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80~90년의 경우 70%). 다만 최근에 들어서야 對개도국 협력의 전형적인 형태인 양자협력을 시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경제협력현황

(단위:백만불)

	'85	'86	'87	'88	'89	'90
A. 정부개발원조(ODA)	48.3	111.5	74.7	62.3	99.5	87.4
- 자본협력	41.9	105.0	66.5	53.8	91.0	78.3
• 무상자금협력	8.5	8.5	9.1	11.4	12.6	11.6
• 다자간자금협력	33.4	96.5	57.4	42.4	76.6	56.8
- 경제협력 차관(EDCF)					1.8	9.9
- 기술협력	6.4	6.5	8.2	8.5	8.5	9.1
B. 기타 공적자금(OOF)	368.0	275.6	346.5	433.0	304.8	426.7
- 수출신용	350.1	261.4	333.1	403.9	155.7	212.9
- 해외투자지원	17.9	14.2	13.4	29.1	149.1	213.8
GNP(억불)	897	1,027	1,284	1,692	2,040	2,379
A/GNP(%)	0.05	0.11	0.06	0.04	0.05	0.04
A+B/GNP(%)	0.46	0.38	0.33	0.29	0.20	0.22

단, 국제협력담당기관의 행정비용은 미포함됨.

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자간 자금협력은 이른바 「받는 협력」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에 최소한의 출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1990년도 정부개발원조(ODA)의 규모는 연간 약 8천 7백만불 내외로서 GNP대비 약 0.0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87~88년 선진국 평균수준인 0.35%를 훨씬 밑돌고 있다(표 참조).

2. 형태별 협력현황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은 역사와 규모면에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우선 형태별로 그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 자금협력에 비해 다자간 자금협력이 훨씬 많았다. 즉, 양자간 자금협력이 '89~90년간 53.5백만불이었던 반면 다자간 자금협력은 같은 기간에 133.4백만불을 기록함으로써, 양자간협력은 전체의 29%에 불과하였다.

둘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소속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공공자금지원이 민간자금을 비하여 훨씬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對개도국 협력은 민간차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실제로 정치·외교적 변수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도외시한 양허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의 포괄적

인 추진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기적 이윤동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 한국기업의 재무구조, 경영능력 및 안목 등을 감안하면 민간자금에 의한 對개도국 협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셋째, 한국의 기술협력사업은 85년에 6.4백만불, 87년 8.2백만불, 89년에 8.5백만불, 90년 9.1백만불로 꾸준히 그 사업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정부개발원조의 액수가 적은 만큼 선진국에 비해 GNP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88년 0.04%로 88년 선진국 평균인 0.35%에 비해 훨씬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협력사업이 정부개발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13%, 88년 14%, 90년 10%로서, 대체로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태권도사범의 파견비까지 기술협력예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 계산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 그룹은 대체로 20%선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기술협력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외협력사업단(KOICA)의 발족으로 대외기술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것 같으나, 아직도 그 기본개념과 전략에 대하여 정책담당자와 추진기관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 기술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수사업의 경우, 중견기술자나 공무원등이 그 전형적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나, 가장 단시간내에 협력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및 사회지도층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활동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1982년에 착수한 KDI의 개도국 고위경제관료들 대상으로 하는 국제연수는 비교적 치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몇몇 여타 국제연수사업의 경우 담당기관 및 관리자 등의 전문성의 결여,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부족, 개념의 결여, 비조직적 운영, 사후관리의 미비 등으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양자간 유상자금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87년 6월에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91년말 기준으로 총 2,100억원(정부출연금 1,200억원과 차입금 900억원)이 조성되어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8개국의 8건에 692억원을 지급기로 결정하였으며 지급액은 4개국의 118억원이다. 이는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양자간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식이 한국이 의도하는 對개도국 경제협력 효과를 거두는 첩경임을 인식할 때 향후 그 절대액은 물론 한국의 기술수준의 상대적 열위를 감안하여 자금측면에서만이라도 여타 선진국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양허적 조건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문제점

우리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경험이 일천하지만 우리의 한정된 자금과 경제력을 갖고 對개도국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對개도국 협력 개념의 미정립: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아울러 무엇을 위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유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나 아직도 개도국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과거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선진제국의 對개도국 경제협력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對개도국 경협」에 관한 관련기관·인사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對개도국 경협을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미비: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자원인 '돈' 즉, 사업예산의 증액이나 경협기금의 확충과 아울러 개도국과 관련된 전문인사양성, 정보수집 및 국내의 관련 법제정비 등 협력에 관련된 하부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연구기능이 미비할 뿐 아니라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국제인 양성, 특히 개도권 전문인력의 양성이 정부차원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특히 정보와 사람을 다루는 것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꾸준한 노력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시급한 준비가 요망된다. 또한 對개도국 협력은 단순히 사업집행기관만의 일이라기 보다는 전국민적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도국을 보는 국민의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셋째, 경협의 대상 및 내용의 불명료: 경제협력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국과 그 대상분야(인사 및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익을 고려하여 무엇을 주어야만 하고 무엇을 주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우리의 비교우위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와 개도국측으로부터의 시각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對개도국 협력의 성과와 그것이 가져온 여러가지 영향에 대하여 수시로 종합적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도록 보다 신축성있게 사업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전략 및 담당기관사이의 협조결여: 국가적 차원에서 對개도국 경협을 추진하는 기본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각종 기술협력사업 담당기관들이 공유된 개념정립이 없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비효율성과 노력의 낭비내지 상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관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VI.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확충방향(대응조치)

1. 對개도국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우선 對개도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對개도국 협력은 장기적 시각에서 시장의 다변화,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확보 등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등 정치·경제적으로 국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또 그렇게 되도록 목적의식을 갖고 사업을 계획·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원조를 받는 수직적 입장에서부터 동반자적 협력제공자로서의 수평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만성적 적자심리에서 흑자심리로의 전환, 대북한 관계를 의식한 외교적 고려에서 실리확보를 위한 경제적 고려로의 전환, 그리고 현안 단기문제의 해결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 수립으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對개도국 경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조낭비론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추진 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대응윤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경협추진을 위한 장기전략(Master Plan)의 수립

한국의 입장에서 對개도국 경협에 대한 이념, 목적, 전략, 수단, 제약요건 등 포괄적 개념을 설정하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발굴, 선정하며 국익증대를 위한 국가와 인사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對개도국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지역별 특성과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국별·지역별 장기진출전략이 하위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맞추어 효율성·신속성있는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방식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장기전략에 따른 경협사업의 조정은 기능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현행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상호보완 및 정보교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일관된 한국의 對개도국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인사 사이에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감대(a common conceptual framework)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 협의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획청, 외무성, 대장성 및 통산성의 이른바 경협 4성 사이에는 정책결정단계에서는 부처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불협화음이 있으나, 추진과정에서는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대외적으로 국익의 손상을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다.

한편, 對개도국 협력은 이해관계를 서로 달리하는 두나라 사이에 이해의 부분적 공통연계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장기종합 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교가 필요하다.

對개도국 경협의 한국적 개념과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작성될 장기전략(Master Plan)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념
- 목적
- 기준: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의 선정기준
 - 협력효과 극대사업의 선정기준
 - 전략국가 및 인사의 선정기준
- 전략: 협력사업규모의 적정수준
 - 협력수단간 적정배분(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 선전국별 진출전략
- 관리체계: 정부부처·관련기관간 협의회 구성, 관민협조체제 구성, 연수사업의 조정 및 표준교재 개발, 사후관리의 보완
- 금기사항, 계약요건 등

3. 경제협력 하부구조의 확충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협기금의 지속적인 증대 이외에 하부구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지속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21세기초 국제화·선진화된 한국경제의 세계 속의 역할을 상정할 때, 이러한 하부구조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對개도국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하부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對개도국 경제추진을 위하여 해외투자 등에 관련된 지원법규의 정비 및 체계화할 것이 요망된다.

둘째, 對개도국 경제추진을 위해서 ① 연수 등 기술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에서의 지한파의 양성과 ② 내국인으로서 개도국 지역전문가 및 경제협력담당전문인재의 양성이 요청된다. 지한파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활동이외에도 기술협력사업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참가자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전문인재의 양성은 한국사회 전반이 필요로 하는 국제인 양성과 더불어 개도권연구 전담기관 등에서 평생직으로 근무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그외에도 개도권에 관하여 기업인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한국인전문가를 육성진출시키고, 현재 근무중인 사람들을 수시로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내지 관행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對개도국 경제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경제관련 정보관리는 ① 우리의 개도국 진출에 필요한 개도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기능과 ② 개도국 국가들이 대한협력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홍보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개도권지역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개도권 정보관리의 총괄기능과 아울러 대학교부설 지역연구소를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對개도국의 개도국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경합을 피할 수 있고 선진국 원조에 대한 후진국으로부터의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여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를 위해서는 장기경협전략에 입각한 '對개도국 홍보전략에 관한 종합구상(마스타프렌)'을 마련하여 관련기관들 사이에 상호협조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출판매체와 국제회의를 통해서 개도국의 대한협력동기를 유발케 하는 기본 지침을 내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4.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민간기업 및 사회·종교단체들로 하여금 對개도국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이들의 활동이 정부의 對개도국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일관된 취지아래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국영기업·학계·민간기업 등 관련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정부의 對개도국 경제협력과 보완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자금지원, 조세감면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협력기금의 활용을 통한 민간기업의 유상자본협력뿐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기술협력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술협력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설·기자재를 이용하여 사업실시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참가자들을 통한 현지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종교단체의 참여는 단기적으로 국익을 실현한다기 보다는 지한인 사층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해당국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VII. 결 론

한국경제의 국제화 내지 선진화 과정에서 동남아는 우리의 새로운 변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이를 효과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對동남아 경제협력이 중요한 수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한국은 기존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 중 비교적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시각에서 구상·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고려할 것은 탈냉전 시대 경제협력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수단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